

○ **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 포괄승낙방식,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) 개정 대비표**

1. 주요 개정내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 전  | 개정 후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약관, 약정서명                   |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<br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<br>포괄승낙방식,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<br>경우) (구 하나은행)  |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<br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,<br>포괄승낙방식,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<br>경우)   | 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<br>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<br>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<br>명칭 삭제 |
| 약관, 약정서 내<br>타 약관,<br>약관서명 |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구<br>하나은행)<br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  |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br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| 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<br>반영   |
| 세부 내용변경                    | 제 3 조 (업무의 방법), 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,<br>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<br>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<br>전자매담대<br>제9조 (관할법원의 합의)<br>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<br>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<br>본점·지역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<br>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| 제 3 조 (업무의 방법), 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,<br>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<br>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<br>전자외담대<br>제9조 (관할법원의 합의)<br>본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<br>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<br>합니다. | 용어변경 : 매담대 → 외담대<br><br>관할법원 기준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